

<투자신탁 해지 공시>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1항 및 해당 투자신탁 약관 제42조 제1항,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(신탁계약해지의 승인) 및 해당 투자신탁 약관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해지를 공시합니다.

1. 대상 투자신탁

구분	펀드명	판매회사
1	신영신종 MMF 제 4-18 호	골든브릿지투자증권
2	신영신종 MMF 제 4-25 호	골든브릿지투자증권
3	신영단기 Green 공사채 1 호 투자신탁	신영증권
4	신영오딧세이주식투자신탁 제 1-G3 호	대우증권
5	I BEST 주식 투자신탁 제 1 호	대우증권
6	신영오딧세이혼합투자신탁 제 5-6 호	한국투자증권
7	신영오딧세이주식투자신탁 제 K-1 호	부국증권
8	신영오딧세이주식투자신탁 제 K-2 호	부국증권
9	신영오딧세이혼합투자신탁 제 5-4 호	교보증권

2. 해지사유 : 지속적으로 설정액이 미미한 소규모펀드로서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함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지를 결정합니다.

3. 해지일자 및 상환금 지급일자 : 2011년 9월 30일(금)

4.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: 상환금 등은 해당 판매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.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1년 9월 15일

신영자산운용㈜